다이렉트 펫블리 반려견보험2409(CM)

특별약관

제4장 반려동물관련

1 | 특약 이름[반려동물 의료비II]

1. (목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2.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용어	정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 반려동물의 소유와 관련하여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용어	정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동물이 입은 상해를 말하며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병	상해를 제외한 상병을 모두 포함합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부가설명	음식물		

반려동물이 일상 생활 중 보호자 또는 생산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모든 식이 원료와 가공품 및 부산물(뼈, 과일 씨 등 폐기 대상물질)을 말하며, 사람 및 다른 동물의 식이로 활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음식물의 상태(부패, 감염 여부 등)와 상관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② 위 ①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 관리하는 개(犬)를 말합니다.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이 계약의 갱신일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3.(보험금의 지급사유)①의 의료비보험금은 3.(보험금의 지급사유)①에서 정한 사고로 발생한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아래에서 정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연간 총 보상한도액 1,500만원 의료비의 경우】

수술 여부	수술 횟수	지급	
구절 서구		보상 한도	자기부담금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	1일당 10만원	
수술을 한 날의	연 2회 초과 시	126 1027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당 자기부담금
경우	연 2회 이하 시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	

【연간 총 보상한도액 2,000만원 의료비의 경우】

④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어	정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갱신형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갱신 주기를 기재하여 드립니다. 예시) 3년/10년/15년만기 자동갱신

3.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일당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된 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이하「의료비」라 합니다)을 이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의료비보험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스스 서 ㅂ	소스 하스	지급	
수술 여부	수술 횟수	보상 한도	자기부담금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	1일당 15만원 <i>/</i> 30만원 중 보험증권에	
수술을 한 날의	연 2회 초과 시	기재된 일당 보상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당 자기부담금
경우	연 2회 이하 시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50만원	

〈지급보험금의 계산 〉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적용 자기부담금) x 보상비율]과 일당 보상한도 중 작은 금액

〈예시안내〉

- · 일 보상한도액: 15만원, 보상비율 80%, 자기부담금 3만원 기준 (예시1)
-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23만원, 수술하지 않은 경우
- 보험금 지급금액
- = [(23만원 3만원) × 80%]과 15만원 중 적은 금액
- = 15만원

(예시2)

-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103만원, 수술한 경우
- 보험금 지급금액
- = [(103만원 3만원) × 80%]과 250만원 중 적은 금액
- = 80만원
- ② 반려동물이 3.(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③ 위 3.(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

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동물병원의 수의사 자격을 가진 자(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수의사법 제17조(개설)에서 규정한 국내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개,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④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⑤ 위 ④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⑥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⑦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⑧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⑨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⑩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⑫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② 회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①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 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②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 라리아감염증, 광견병

- ③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④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⑤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⑥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⑦ 미용으로 인한 비용
- ⑧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⑨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 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⑩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 약, 의약부외품 등)
- ①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 의료. 재활치료
- ②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상품 값 포함) 및 이어클리너, 벼룩, 젝켄, 모공충의 제 거비용
- ®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 종의 비용
- ④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⑤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⑥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⑰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 사이토포 인트 등의 Lokivetmab 성분의 약물
- ③ 위 ②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②에서 정한 조치 (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가입동물인 개에 대하여 아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 ②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비용 ③ 구강내 질환

2 | 특약 이름[반려동물 의료비II(확장보장) (MRI,CT,내시경)(연간1회한)]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가 치료 중 「영상검사(MRI,CT,내시경)」를 시행한 경우,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된 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이하「의료비」라 합니다.)에서 반려동물 의료비Ⅱ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을 이 약관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①의 반려동물 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이란 [제4장 반려동물관련] 『1.반려동물 의료비॥(실손)(갱신형) 특별약관』, 『3.반려동물 의료비॥ 슬관절 및 고관절탈구 확장보장॥(실손)(갱신형) 특별약관』, 『4.반려동물 의료비॥ 치과및구 강질환 확장보장(실손)(갱신형) 특별약관』, 『5.반려동물 의료비॥ 특정피부약물치료 확장보장(실손)(갱신형) 특별약관』, 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합계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 의료비॥ 자기부담금을 말합니다.
- ④ 위 ①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 관리하는 개(犬)를 말합니다.
- 5 위 1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이 계약의 갱신일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보상은 연간 1회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보상 금액은 1. ①에서 정한 사고로 발생한 의료비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지급보험금(보상금액)의 계산〉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 반려동물 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 자기부담금) × 보상비율]과 보험증권에서 정한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예시안내)

• 보상한도액 50만원, 보상비율 80%, 자기부담금 3만원 기준

(예시1)

- 피보험자가 영상검사(MRI) 시행 당일 부담한 의료비 : 318만원
- 반려동물 의료비॥에서 지급한 보험금 : 15만원
- 보험금 지급금액 = [(318만원 - 15만원 - 3만원) × 80%]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 50만원

(예시2)

- 피보험자가 영상검사(MRI) 시행 당일 부담한 의료비 : 68만원
- 반려동물 의료비॥에서 지급한 보험금 : 15만원
- 보험금 지급금액 = [(68만원 - 15만원 - 3만원) × 80%]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 40만원
- ③ 반려동물이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3. ("영상검사(MRI,CT,내시경)"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영상검사(MRI,CT,내시경)"라 함은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 층촬영(CT) 및 내시경 검사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자기공명영상(MRI)"이라 함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자기공 명영상(MRI)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컴퓨터단층촬영(CT)"이라 함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컴퓨터단층촬영(CT)"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③ 위 ①의 "내시경 검사"라 함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내시경을 이용 하여 비침습적으로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말하며, '식도', '위' 또는 '장'에 시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④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⑤ 위 ④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⑥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⑦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⑧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⑨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⑩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 태
- ⑫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② 회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①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 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②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 라리아감염증, 광견병

- ③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④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⑤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⑥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⑦ 미용으로 인한 비용
- ⑧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⑨ 손톱걸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⑩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 약, 의약부외품 등)
- (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 의료, 재활치료
- ②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상품 값 포함) 및 이어클리너, 벼룩, 젝켄, 모공충의 제 거비용
- ③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 종의 비용
- ⑭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 이와 동종의 비용
- ⑤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⑥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⑰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3 | 특약 이름[반려동물 의료비II 슬관절 및 고관절탈구 확장보장II]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통약관 『1.반려동물 의료비Ⅱ(실손)(갱신형) 특별약관』7.(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④의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동물 의료비를 『1.반려동물 의료비॥(실손)(갱신형) 특별약관』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①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 관리하는 개(犬)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위 ①의 사고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 특약 이름[반려동물 의료비II 치과 및구강질환 확장보장]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1.반려동물 의료비Ⅱ(실손)(갱신형) 특별약관』7.(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④의 ②, ③에도 불구하고,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비용, 구 강 내 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동물 의료비를 『1.반려동물 의료비Ⅱ(실 손)(갱신형) 특별약관』3.(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5 | 특약 이름 [반려동물 의료비 II 특정피 부약물치료 확장보장]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1.반려동물 의료비Ⅱ(실손)(갱신형) 특별약관』 7.(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의 ⑱에도 불구하고, 특정피부약물치료로 생긴 반려동물 의료비를 『1.반 려동물 의료비Ⅱ(실손)(갱신형) 특별약관』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①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 관리하는 개(犬)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특정피부약물치료라 함은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여 시행한 치료를 말합니 다.
 - ①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anse inhibitor) 약물
 - ② 사이토포인트 등의 Lokivetmab 성분의 약물

6 | 특약 이름[**반려동물 의료비**III]

1. (목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사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2.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관리하는 개(犬)를 말합니다.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이 계약의 갱신일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의료비보험금은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고로 발생한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아래에서 정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연간 총 보상한도액 700만원 의료비의 경우]

수술 여부	수술 횟수	지급	
구절 서구		보상 한도	자기부담금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1일당 10만원	
수술을 한 날의	연 2회 초과 시	120 1022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당 자기부담금
경우	연 2회 이하 시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150만원	

3. (보험금의 지급사유)

-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일당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된 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이하「의료비」라 합니다)을 이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의료비보험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연간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위 ①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

[연간 총 보상한도액 1.000만원 의료비의 경우]

수술 여부	수술 횟수	지급	
구절 역구	구절 첫구	보상 한도	자기부담금
수술을 하지 않은 날의 경우	-	1일당 15만원	
수술을 한 날의	연 2회 초과 시	150 1355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당 자기부담금
경우	연 2회 이하 시	수술당일에 한하여 1일당 200만원	

〈지급보험금의 계산 〉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적용 자기부담금) x 보상비율]과 일당 보상한도 중 작은 금액

〈예시안내〉

- · 일 보상한도액 : 15만원, 보상비율 80%, 자기부담금 3만원 기준 (예시1)
-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23만원, 수술하지 않은 경우
- 보험금 지급금액
- = [(23만원 3만원) × 80%]과 15만원 중 적은 금액
- = 15만원

(예시2)

-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103만원, 수술한 경우
- 보험금 지급금액
- = [(103만원 3만원) × 80%]과 250만원 중 적은 금액
- = 80만원
- ② 반려동물이 3.(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③ 위 3.(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

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동물병원의 수의사 자격을 가진 자(이하 "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수의사법 제17조(개설)에서 규정한 국내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개,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④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⑤ 위 ④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⑥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⑦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⑧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⑨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⑩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②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② 회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①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 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②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 라리아감염증, 광견병

- ③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④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⑤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⑥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⑦ 미용으로 인한 비용
- ⑧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⑨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 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⑩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 약, 의약부외품 등)
- ①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 의료. 재활치료
- ②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상품 값 포함) 및 이어클리너, 벼룩, 젝켄, 모공충의 제 거비용
- ®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 종의 비용
- ④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⑤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⑩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⑰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nase inhibitor) 약물, 사이토포 인트 등의 Lokivetmab 성분의 약물
- ③ 위 ②에서 정한 조치에 다른 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②에서 정한 조치 (마취 비용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가입동물인 개에 대하여 아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 ②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비용 ③ 구강내 질환

7 | 특약 이름 [반려동물 의료비॥(확장보장) (MRI,CT,내시경)(연간1회한)]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 재된 반려동물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의사가 치료 중 「영상검사(MRI,CT,내시경)」를 시행한 경우, 당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된 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이하「의료비」라 합니다.)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 을 이 약관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①의 반려동물 의료비삐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이란 [제4장 반려동물관련] 『6.반려동물 의료비삐(실손)(갱신형) 특별약관』, 『8.반려동물 의료비삐 슬관절 및 고관절탈구 확장보장비(실손)(갱신형) 특별약관』, 『9.반려동물 의료비삐 치과및구 강질환 확장보장(실손)(갱신형) 특별약관』, 『10.반려동물 의료비삐 특정피부약물치료 확장보장(실손)(갱신형)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합계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 의료비Ⅲ 자기부담금을 말합니다.
- ④ 위 ①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 관리하는 개(犬)를 말합니다.
- 5 위 1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이 계약의 갱신일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보상은 연간 1회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보상 금액은 1. ①에서 정한 사고로 발생한 의료비에서 반려동물 의료비Ⅲ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과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지급보험금(보상금액)의 계산〉

[(피보험자가 부담한 당일 의료비 - 반려동물 의료비Ⅲ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보험금 - 자기부담금) × 보상비율]과 보험증권에서 정한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예시안내〉

· 보상한도액 50만원, 보상비율 80%, 자기부담금 3만원 기준

(예시1)

- 피보험자가 영상검사(MRI) 시행 당일 부담한 의료비 : 318만원
- 반려동물 의료비Ⅲ에서 지급한 보험금 : 15만원
- 보험금 지급금액 = [(318만원 - 15만원 - 3만원) × 80%]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 50만원

(예시2)

- 피보험자가 영상검사(MRI) 시행 당일 부담한 의료비 : 68만원
- 반려동물 의료비Ⅲ에서 지급한 보험금 : 15만원
- 보험금 지급금액 = [(68만원 - 15만원 - 3만원) × 80%]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 40만원
- ③ 반려동물이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부터 365일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워('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3. ("영상검사(MRI,CT,내시경)"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영상검사(MRI,CT,내시경)"라 함은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 층촬영(CT) 및 내시경 검사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자기공명영상(MRI)"이라 함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자기공 명영상(MRI)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컴퓨터단층촬영(CT)"이라 함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컴퓨터단층촬영(CT)"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내시경 검사"라 함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수의사의 관리 하에 내시경을 이용 하여 비침습적으로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말하며, '식도', '위' 또는 '장'에 시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④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⑤ 위 ④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⑥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⑦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⑧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⑨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⑩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⑫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② 회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아래의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①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 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②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감염증, 전염성 간염,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렙토스피라감염증, 필 라리아감염증, 광견병

- ③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④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⑤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⑥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⑦ 미용으로 인한 비용
- ⑧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③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 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⑩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 약, 의약부외품 등)
- (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 의료 재활치료
- ②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상품 값 포함) 및 이어클리너, 벼룩, 젝켄, 모공충의 제 거비용
- ③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 종의 비용
- ④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⑤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⑥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⑰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8 | 특약 이름 [반려동물 의료비 III 슬관절 및 고관절탈구 확장보장 II]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 회사는 보통약관 『6.반려동물 의료비Ⅲ(실손)(갱신형) 특별약관』7.(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④의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에게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동물 의료비를 『6.반려동물 의료비Ⅲ(실손)(갱신형) 특별약관』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①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

관리하는 개(犬)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위 ①의 사고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 | 특약 이름[반려동물 의료비Ⅲ 치과 및구강질환 확장보장]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6.반려동물 의료비Ⅲ(실손)(갱신형) 특별약관』7.(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④의 ②, ③에도 불구하고,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비용, 구 강 내 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동물 의료비를 『6.반려동물 의료비Ⅲ(실 손)(갱신형) 특별약관』3.(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0 │ 특약 이름 [반려동물 의료비Ⅲ 특정피 부약물치료 확장보장]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6.반려동물 의료비Ⅲ(실손)(갱신형) 특별약관』7.(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의 ⑱에도 불구하고, 특정피부약물치료로 생긴 반려동물 의료비를 『6.반려동물 의료비Ⅲ(실손)(갱신형) 특별약관』3.(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①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 관리하는 개(犬)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특정피부약물치료라 함은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여 시행한 치료를 말합니 다.
 - ① 아포퀠(Apoquel) 등의 JAK inhibitor(Janus kianse inhibitor) 약물
 - ② 사이토포인트 등의 Lokivetmab 성분의 약물

11 | 특약 이름[반려동물 장례지워비]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아래의 금액을 반려동물 장례지원비로보상하여 드립니다.

장례지원비	지급금액		
	경과기간	지급금액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상	가입금액의 100%	
생신형(갱신계약)의 경우	 가입금액의 100%		

- ② 위 ①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 관리하는 개(犬)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이 계약의 갱신일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손해.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④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
- ⑤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⑥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 태
- ⑦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⑧ 위 ⑦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 태
- ⑩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 장례비용(화장비용)을 더한 금액에 70%를 곱한 비용을 말합니다.
- ③ 위 ②의 기준장례비용이란 반려동물 장례 중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기준장례용품(기본유골함, 보자기, 기본 국화, 기본 나무관, 기본 수의에 한합니다.)에 대한 장례비용(최소 무게 기준)을 말하며 최대 50만원한도로합니다. 단, 기능성유골함, 고급수의(보), 추모보석 제작, 고급 케이스, 고급 특수관, 꽃다발, 리무진이용, 산골, 납골당 등 기준장례용품 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항목들은 기준장례비용에서 제외합니다.
- ④ 위 ①의 반려동물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 관리하는 개(犬)를 말합니다.
- 5 위 1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 | 특약 이름[**반려동물 장례지원비II**]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이하 '장묘업체'라 합니다.)에서 반려동물 장례 중 발생한 장례비용(각종 할인 및 감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에 대해 아래 반려견 구분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반려견 구분은 견종별 평균 무게에 따라 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반려견 구분	보상한도
소형견	40만원
중형견	50만원
대형견	60만원
 초대형견	100만원

② 위 ①의 장례비용은 장묘업체에서 정의하는 기준장례비용에 무게에 따른 추가

(예시1)

- · 소형견 5KG 기준
- 기준장례비용 : 0~5kg 기준 60만원
- 보험금 지급금액
- = [(60만원 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X 70% 과 40만원 중 적은 금액]
- = 35만워

(예시2)

- · 충형견 15KG 기준
- 기준장례비용 : 0~5kg 기준 60만원
- 무게에 따른 추가 장례비용 : 5KG초과 시 1KG 당 1만원
- 보험금 지급금액
- = [(60만원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 (15KG-5KG) × 1만원/KG] × 70% 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 = 42만원

(예시3)

- · 대형견 35KG 기준
- 기준장례비용 : 0~5kg 기준 60만원
- 무게에 따른 추가 장례비용 : 5KG초과 시 1KG 당 1만원
- 보험금 지급금액
- = [(60만원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 (35KG-5KG) × 1만원/KG] × 70% 과 60만원 중 적은 금액
- = 56만원

13 | 특약 이름[반려동물 배상책임II(대물포함)]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동물 (개)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 타인의 신체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및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 ②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일으킨 경우
- ② 위 ①의 "반려동물(개)"이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관리하는 개(犬)를 말합니다.
- ③ 위 ①.②의 타인의 재물은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을 제외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① 피보험자가 12.(손해방지의무) ①.①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④ 피보험자가 12.(손해방지의무) ①②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②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 피보험자가 13.(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② 및 ③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③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④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⑤ 위 ④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⑥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⑦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⑧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⑨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 ⑪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배상책임
- ⑪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②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⑭ 가입 반려동물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 ⑤ 가입 반려동물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4. (의무보험과의 관계)

□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

- 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16.(보험금의 분담)을 따릅니다.
- ② 위 ①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 험자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위 ①의 "의무보험에서 보상 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5.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으로 합니다.
 - ①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②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의 ③, ④ 또는 ⑩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③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의 ④ 또는 ④의 비용 : 이 비용과 위 ① 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2 위 1의 보상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보험금의 지급사유)①.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①.②
보험가입금액 5백만원 기준	5백만원	5백만원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1천만원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기준	2천만원	1천만원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3천만원	

③ 위 ①의 자기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보험금의 지급사유)①.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①.②
보험가입금액 5백만원 기준	3만원	3만원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3만원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기준	10만원	10만원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10만원	